

의안번호	2220070
의 퇴 인	채현일의원
회 답 일	2026. 7. 29.
추계번호	26B3724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2조의2(공공기관의 인공지능시스템 보안) 신설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시스템을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도입·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인공지능시스템의 이용에 따른 보안 위험의 분석·평가 및 대응 2. 해당 공공기관의 데이터 보유·관리 등을 위한 정보체계에 대한 접근 권한의 관리·통제에 필요한 조치 3. 해당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한 공공데이터 유출의 예방 및 차단에 필요한 조치 4. 해당 인공지능시스템의 접속기록, 입·출력기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취득·보관에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인공지능시스템의 이용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데이터의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2조의2(공공기관의 인공지능시스템 보안)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장이 인공지능시스템을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도입·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공지능시스템의 이용에 따른 보안 위험의 분석·평가·대응, 해당 공공기관의 데이터 보유·관리 등을 위한 정보체계에 대한 접근 권한의 관리·통제에 필요한 조치, 해당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한 공공데이터 유출의 예방 및 차단에 필요한 조치, 해당 인공지능시스템의 접속기록, 입·출력기록 등 정보의 취득·보관에 필요한 조치 등’ 보안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임

○ 2026년 기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¹⁾의 수는 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58개, 기타공공기관 254개 등 총 342개임

[표 1] 공공기관 지정 현황

구분	'24년	'25년	'26년
① 공기업	32	31	30
■ 시장형	14	14	14
■ 준시장형	17	17	16
② 준정부기관	55	57	58
■ 기금관리형	12	12	12
■ 위탁집행형	43	45	46
③ 기타공공기관	240	243	254
계	327	331	342

자료: 재정경제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 보안조치를 취하는 공공기관의 수, 공공기관별 보안조치의 유형 및 내용, 국가의 재정지원 여부 및 규모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인공지능시스템의 도입·활용 여부, 필요한 보안조치의 유형 및 정도 등은 각 공공기관의 특성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공지능시스템 보안조치 실시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여부 및 규모 등에 대한 계획 역시 수립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정부는 「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국가정보원, 2025.12.)」, 「인공지능(AI) 보안 안내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2025.12.)」 등 인공지능시스템 보안 관련 가이드라인을 수립·배포한 바 있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